

# 북한문화재조사와 전망

김 봉 건(金奉建)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

## 目 次

- |               |             |
|---------------|-------------|
| 1. 조사, 연구의 배경 | 2. 북한문화재 현황 |
| 3. 조사, 연구 현황  | 4. 향후 조사계획  |

### 1. 조사, 연구의 배경

본래 한민족은 동일민족, 동일언어를 가진 집단으로 여러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래 지난 40여 년간 사회 각분야에서 남북한의 단절 현상이 심각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한민족의 동질성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단절로 인한 상호간의 이질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전망이어서 진정한 민족화합에 의한 민족통일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분야로 일부이나마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 서로 이질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장, 분화를 겪어온 남북한 사회가정치적 접근만으로는 동질화될 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두 체제의 차이점은 정치적 통일을 거부할 정도로 사회 문화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분단극복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 경제 분야만의 접근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회, 문화적 및 역사적 통합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는 다양한 분야의 한민족 공동체적 삶을 함축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인 문화재에 대한 남북한간의 이해와 연구를 통해 한민족의 과거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공동체인 한민족의 정체성 정립과 이해가 가능하다. 과거에 대한 조명작업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예견에 대한 토양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했던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는 현재의 문화적 괴리와 단절감을 극복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 경제 분야만의 접근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 할 수 있게 하며 문화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런 배경 하에 문화체육부에서는 1984년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착

수하였다. 당시만 해도 북한문화재관계 자료는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북한문화재 조사, 연구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북한관계자료제공을 요청하여도 협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통일원, 구가안 전기획부,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소 등의 관계기관과 국내외 관계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자료수집 및 연구를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당초 북한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여도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7·7 선언 이후 남북한의 관계를 대결, 적대구조에서 교류,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의지를 구체화하였다. 이런 취지 하에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허용(1988.7.16), 대북 교역의 문호 개방(1988.10.7)조치가 잇따라 취하여졌고 1990년 8월 1일 마침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북한문화재조사, 연구사업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 2. 북한문화재 현황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기본정책과 이를 수립·운영하는데 소용되는 제도, 조직과 자금이다. 현재 수집된 자료로는 북한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다만 제한된 자료이나마 보존과 관련한 북한의 문화재 보존정책, 제도와 조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북한문화재보호제도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는 1946년 4월 북한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고 이 사업을 집행할 ‘고적보존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48년 내각 결정에 따라 ‘물질문화유적 보존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고 직속기관으로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두게 된다. 최근에 다시 이 법령을 개정하여 ‘문화유물보호법’(1994.4.8 법령 제 26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우리의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한 성격의 법으로 문화재보호에 대한 기본법령으로 생각되며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 통제 등 총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란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재란 명칭 대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를 ‘문화유물’로 명명하고 있다. 문화유물은 다시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등의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을 역사유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분류방법은 문화재의 이동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동산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우리의 업무개념과 유사하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북한은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문화유물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차이가 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의 기념물에 속하는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등은 문화유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 보호되고 있다.

북한은 지정문화재 중요도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3가지로 구분하는 우리의 제도와 유사하나 국보와 준국보문화유물은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평가를 담당하는 등 단계별 담당기관은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건설할 경우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사항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과 유사하다. 또한 우리의 '문화재보호구역'과 유사한 개념인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이 구역 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중에서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조에서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있어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보호관리에 있어 과학적 연구성과의 중요성을 법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제9조에서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있어 세계 여러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물의 복구개선이 법령상 중요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과학적 고증자료에 근거한 형성안으로 만들어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역사유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유물보존기관에서는 국보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문화유물보호 부분의 설비, 자금, 자재, 자금, 노력을 다른 부문에 돌려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출판기관 등에서 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예시한 대부분의 규정은 우리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도 그 기본개념은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유물보호법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차이는 문화유물을 인민들의 긍지화 자부심을 높여 주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시한 북한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문화유물보존기관인 박물관 건설이 문화유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이 문화유물보호기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과 주민들의 계도기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양면을 찾아 볼 수 있다.

## 남북한문화재 제도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비 고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유물보호법	
목적	문화재보존 활용 국민의 문화적향상도모 인류문화발전기여	제도, 질서 확립 문화유물원상보존 민족문화유산계승, 발전 민족적 긍지, 자부심 높임	
문화재종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민속자료-풍속, 관습과 관계물건 전통건축물	역사유적-원시유적, 건물무덤, 탑, 비석성, 건물터 역사유물-생산도구,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무형문화재제도 없음 천연기념물, 명승은 문화재개념에 미포함 -타법령에 의해 보호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	

### 2) 북한의 문화재 보존조직

북한에서는 문화유물 보존은 중앙과 지방의 문화유물보존지도 기관과 해당전문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의 보존지도기관으로는 우리의 문화재관리국과 같은 성격의 ‘문화유물보존국’이 있다. 전문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산하의 고고학연구소, 역사연구소를 들 수 있다. 지방에는 보존지도기관으로 문화유적관리소가 있으며 조사연구는 각 지방의 ‘역사박물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에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다. ‘조선물질문화 유물보존조사 위원회’는 내각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물질문화의 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며 역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 사업을 관리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도에는 위원장 1인, 위원 8명으로 조직된 유물조사보존 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 3) 북한 문화재보존의 정책

북한의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문화재보존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의 시대별 문화재보존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4기로 구분하여 정책이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1) 제1기

해방부터 1948년 11월 내각 직속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 보존위원회’가 설치되기 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북한 소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4월 29일자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 규정> 이 발표되었는데 전문 11조로 된 보존회의 내용은 문화재 지정권자, 해외반출

금지, 변경, 해제에 대한 사전허가와 비용 부담, 벌칙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48년에는 기존의 평양박물관 외에 청진, 신의지, 함흥, 묘향산 등에 박물관을 신설하였다. 1947년에는 평양 낙방리 고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이 당시의 북한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2) 제2기

이 시기는 50년대에 해당되는 시기로 문화재 보호관리제도의 개편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 및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내세웠던 시기이다. 1948년 내각 산하에 조선물질문화 유물보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원시 및 고고학부, 미술 및 건축부, 민속학부, 박물관 지도부 등 4개부가 설치되었다. 종래의 박물관은 문화선전성에서 담당하였으나 이때부터 조사보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은 평양시와 각도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였다. 1948년에는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고 또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 봉산의 성불사 극란전을 비롯한 90여개의 유적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황해도의 자혜사 등 중요 유적 121개소에 대한 실측, 탁본, 촬영 등의 조사사업과 대장작성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 (3) 제3기

이 시기는 50년에 이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한편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는 시기로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에 걸치는 시기이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문화성 산하 해당기관, 시도 경영성, 관계학자 과학지식보급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조직된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화유물과 유적의 확인고증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으로는 굴포리 검은모루 유적들을 발굴하여 한반도에서의 구석기시대 존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김일성 유일사상이 확립기로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등의 혁명문화재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당성 노동 계급성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75년까지 3,200여개의 유적과 119,000여개의 유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대장을 정리하였다.

#### (4) 제4기

이시기는 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작업과 연계되고 있을 뿐이다. 81년에는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이조실록의 번역을 완료하였고 <조선전사> 전333권을 발간하였으며 100명으로 구성된 <고적발굴대>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상원 검은모루 출토유물을 근거로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가 신라가 아닌 고려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단군릉을 발굴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범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 4) 북한의 문화재 지정현황

현재 북한문화재의 등록 현황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 다만 문화공보부에서는 1960년 북한 소재 문화재 143점을 문화재 지정한 바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발효와 함께 1971.1.31 현재 현존한다고 확실시되는 유형문화재 52점을 골라 지정하였다. 당시의 조치는 북한의 민족문화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

유문화진흥정책을 대외에 과시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북한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1957년 중앙정부에 의해 당시 272개의 문화재가 국가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부문은 1980년 2월 정무원에서는 평남 맹산군의 맹산 만주 흑송림 등 45점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다. 그 이후 1980년 2월 정무원 지시 27호에 의하여 삼일포 등 60건의 지리부문의 천연기념물을 추가 지정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는 평양 모란봉 등 18건의 명승지가 지정되어 있다.

### 3.조사, 연구 현황

1984년 북한문화재조사연구 착수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수집을 계속한 결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광개토대왕비연구 100년’ 등 도서 772권, ‘안학궁지’등 슬라이드 필름 4,,198매, ‘평양성 명문석’ 등 사진 626매, ‘금강산’등 비디오테이프 36종, 탁본 2건 등 총 5종 6,475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외에도 관련단체와 개인 차원에서의 북한관계자료 수집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북한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은 자료수집과 함께 수집자료 정리하여 북한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문화재연구 진흥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총 5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전문가, 일반인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북한문화재 실태와 현황’(‘85)은 그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체제, 유적발굴현황, 문화재 일반 현황 및 지정현황 및 관계법령을 설명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였다. ‘북한문화재문헌회보’(‘90)는 1945년에서 1990년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문화재 관계 각종 단행본과 논문집 등의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자료 종류별과 필자별로 분류 정리하여 발간하므로써 국내의 북한문화재조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북한문화재유적발굴개보’(‘91)는 1945년에서 1990년까지 발굴한 공귀리 유적 등 총 315건에 대한 발굴 현황, 내용, 성격, 유물과 의의 및 참고문헌 등을 요약하여 발간하였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 북한의 발굴내용이 인용, 소개되었으나 본 보고서와 같이 북한의 발굴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한 것은 해방이후 처음이었다. 이러한 업적으로 본 보고서는 ‘92 동원학술상을 시상하였다. ‘92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집한 북한문화재 정보를 총정리하여 ‘북한문화재 자료목록’을 발간하였으며 ‘93에는 수집된 사진자료를 정리하여‘북한문화재목록’을 발간하여 북한문화재 실상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였다. 북한문화재도록 발간과 함께 경북궁 지하철 역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경주, 목포, 부여 등지에서도 순회 사진전을 개최하여 일반인 특히 실향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의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노력과 함께 관련단체나 학자들도 활발한 자료수집과 책자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국토통일원에서는 1986년에는 ‘북한의 문화재보존 및 활용실태’ 제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고 ‘97에는 ‘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이란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북한문화재 관련보고서 발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에서는 1997년 일본 동경에서 외국과 공동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관계학자들이 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외에도 학자 개인들의 전공분야와 관련한 단행본이나 논문들이 발표되어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

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문예진흥원이 주관하여 '북한의 문화유산'이란 제목 하에 분야별 북한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도면과 해설을 포함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건축분야에서는 이왕기 교수의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94)가 발간되어 시대별, 분야별 연구 경향과 건축관련문헌목록을 광범위하게 정리 소개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역사학회의 '북한의 고대사연구('90), 대륙연구에서 김정배교수의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94)를 주제로 시대별, 분야별 고대사 연구경향을 정리 소개하였다. 미술사 부문에서는 전호태 교수의 학위논문인 '고구려고분벽화'가 발표되었다.

민속학 분야에서도 주장현씨의 '북한민속학사'('91), 문화재관리국의 '북한민속 종합조사 보고서'('97)등이 발간되어 북한 민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학자들에 의한 연구 외에도 북한 문헌의 국내 출판 작업도 진행되어 국내의 북한 문화재연구를 촉진시켰다. 이런 서적으로는 역사부문의 '고려사('92 아름출판사)', 건축부문의 '조선건축사'('93. 도서출판 발언), 민속부문의 조선민속풍습 ('92. 서광학술자료사) 등을 들 수 있다.

#### 4. 향후조사계획

최근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따라서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북한문화재조사, 연구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경직된 남북관계에 비하여 관계가 개선되어 조사연구의 여건을 훨씬 성숙되어 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앞으로의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기존의 자료수집 창구를 다변화하여 누락자료와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자료수집시 일정 분야에 집중하여 수집,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효율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제시 북한연구관계자료도 반드시 수집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자료는 북한문화재의 보존상태확인과정통일후의 보수 및 복구 등이 필요할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민간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총괄 정리하는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의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미공개 자료의 공개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집자료의 체계적 정리는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수집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절약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 수집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하여 북한 현지조사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자료수집 방법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단체나 전문가의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조사시에는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조방안도 적극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현지조사에 앞서 상호신뢰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남북간의 문화재관련자료 상호 교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교환의 한 방안으로 남북한 문화재의 교환전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교환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이차적으로는 남북한 학자들의 상호방문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 경우 필요하다

면 국내외의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은 서로간 많은 정보의 축적과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척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자료는 공개된 상태이므로 이를 토대로 분야별 연구가 심층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학술연구의 진흥은 기본자료의 공개와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문화재해설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97부터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사진, 도면, 해설 등이 망라된 종합보고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 <부록>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법령 제26호(1994.4.8)

####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 수집되고 복구개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려 나간다.

제5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 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제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 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 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 재보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유물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 기술적으로 발굴하며 발굴이 끝나는 차제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3조 기관, 사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발견에 대하여 통보 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역사유물작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역사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 준다.

제15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유물은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을 제때에 평가하여 주어야 한다.

제19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평가된 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 기관이 등록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 유물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유물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4조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5조 역사유적보호구역 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제26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적에 표식주, 설명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우며 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 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 수 없다.

제28조 문화유물보조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0조 역사유적을 이용하는 기관, 사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3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 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상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역사유물은 팔고 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 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국보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 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은 해당 역사적 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 개건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과 해당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역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 형성안의 승인은 정무원이 한다.

제38조 역사유적의 개건설계는 해당설계기관이 한다. 해당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역사유적 개건설계의 승인은 중앙문

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의 복구개선대상을 기본건설계획 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제40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역사유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1조 역사유적은 승인없이 이설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다. 역사유물의 복원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 제6장 문화유물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 해당기관은 관할지역 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꾸릴 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속촌도 꾸릴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을 꾸미려는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국가회계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노력을 다른 부문에 돌려 쓸 수 없다.

제47조 정무원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제48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옹기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고 문화유물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계획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49조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하여야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 문화유물을 도굴하였거나 역사유물을 팔고 사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유물을 몰수한다.

제51조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선질서를 어겨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